##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7. 6.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 1. 제안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시장과 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구광역시, 건설교통부, 동구청관계공무원,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의 혁신도시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에 속한 자,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입법예고(2007. 4. 20~5. 10)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 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 4.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과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대구광역시, 건설교통부 및 동구청 관계공무원
- 2. 이전공공기관과 그 밖의 혁신도시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에 속한 자
- 3.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5조를 준용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시장인 위원장이 진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서면심의)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 등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 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혁신도시지원단장이 되며, 서기는 이전기획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 령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①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2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이하 "공동혁신도시"라 한다)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 2. 혁신도시의 산업계·학계·행정기관 등의 협동 계획에 관한 사항
- 3. 혁신도시 내 지식 및 정보산업 등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 4.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대학·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 5.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③혁신도시관리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혁신도 시가 들어선 시·도가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④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와 건설교통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 등에 관한 전문가, 이전공공기관 그밖의 입주기관·대학·연구소·경제단체에 속한 자 중에서시·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된다.
- ⑤위원장은 시·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 ⑥그 밖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도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가 협의하여 정한다.